

GO

국가정보기구

안기부/국정원

## 안기부법 대공수사권에 대한 (보수우익) 견해

1. 국가안전기획부법관련대공수사권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국가안전기획부법관련6인협의회, 1997
2. 안기부 대공수사 강화는 시대적 요구, 정형근, 1996
3. 안기부 대공수사권 회복에 대한 견해, 오제도, 1997
4. 안기부 대공수사법 개정해야 한다, 오제도
5. 성명서, 안기부 대공수사권 회복하여 고정간첩 색출하자

□ 일 시 : 1997. 3. 12 (수) 10: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국가안전기획부법관련대공수사권에 관한 공 청 회

- 일 시 : 1997. 3. 12 (수) 10: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국가안전기획부법관련6인협의회

국가안전기획부법관련대공수사권에 관한  
공 청 회

□ 일 시 : 1997. 3. 12 (수) 10: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국가안전기획부법관련6인협의회  
사실상 국회 주관

## 목 차

1. 목 적 .....	1
2. 안 건 .....	1
3. 일시 및 장소 .....	1
4. 협의회 위원.....	1
5. 진술인 .....	2
6. 진행순서 .....	2
7. 진행방법 .....	3
8. 진술인의 진술내용.....	3
o 박연철(변호사).....	4
o 양동안(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18
(※ 기타 진술인 : 별도)	
□ 공청회장 좌석표.....	26

# 국가안전기획부법관련대공수사권에관한공청회

## 1. 목 적

국가안전기획부법 관련 대공수사권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파악하는데 있음.

## 2. 안 건

국가안전기획부법 관련 대공수사권에 관한 공청회

## 3.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1997. 3. 12 (수) 10:00 (1일간)

나.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4. 협의회 위원 (6인)

교섭단체	위원장	비고
신한국당 (2인)	金道彦 張永喆	
새정치국민회의 (2인)	林福鎮 千正培	
자유민주연합 (2인)	韓英洙 咸錫宰	

<※ 교섭단체별 가,나,다순 >

## 5. 진술인 (진술순)

가. 대표 진술인 (2인)

- 오제도 (변호사)
- 박연철 (변호사)

나. 진술인 (4인)

- 박 흥 (서강대학교 교수)
- 곽노현 (한국방송대학교 교수)
- 양동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이재훈 (변호사)

## 6. 진행순서

- 개회선포
- 사회자 인사말씀 및 공청회 운영방법 설명
- 진술인 소개
- 진술인 발표
  - 대표 진술인 발표 (2인)
  - 진술인 발표 (4인)
- 의원 질의 (3인) 및 진술인 답변
- 방청인 의견개진
- 사회자 인사말씀
- 폐회 선포

## 7. 진행방법

- 가. 공청회는 국회의 공청회 운영방법에 준하여 진행함.
- 나. 진술인의 발표와 의원의 질의는 의제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함.
- 다. 발언시간은 대표진술인 30분, 기타 진술인 10분, 의원 질의 5분 이내로 함.
- 라. 진술인의 발표도중 질의·응답이나 상호간의 토론은 행하지 아니함.
- 마. 의원의 질의는 진술인을 대상으로 함.

## 8. 진술인의 진술내용 (별첨)

- 박연철 (변호사) : 4 쪽
  - 양동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18 쪽
- ※ 기타 진술인 내용은 별도

# 안기부법 재개정 논의에 관한 관견

박 연 철

(변호사)

1. 머릿말
2. 안기부의 위상과 활동에 대한 개관
3.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
4. 결 론

# 안기부법 재개정 논의에 관한 관점

변호사 박연철

## 1. 머릿말

오늘 국회에 와서 안기부법재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설립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회원 중 하나로서 안기부법의 개정논의가 무르익고 있을 무렵 1996. 11. 28. 이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였고, 그후 안기부법에 개정된 이후 1997. 2. 27. '안기부법개악철회와 민주적 개정을 위한 국제심포지움'에서 '안기부수사권 및 정보수집권남용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통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공개된 심포지움에서는 대체로 안기부에 대하여 깊은 의구심과 아울러 적대감을 가진 입장에서 다루어진 점도 있었고, 안기부의 위상이 종전처럼 복귀되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전될 수 없으리라는 끝없는 불안감이 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는 입법권을 행사하여 국정의 기본틀을 형성하는 국회이므로 제 자신의 솔직한 견해를 더 숨김없이 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기부법의 개정에 대하여 제가 느끼는 것은 국회의 입법태도가 본질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타협적인 입법을 하려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중 어느 죄는 안기부에서 수사하고 어느 죄는 수사할 수 없고 하는 문제는 지극히 상대적인, 양적인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안기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않은지에 관하여 기본적인 방침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제 오늘 재개정된 부분중 찬양고무 등의 죄에 관하여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불고지죄에 대하여서만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타협론이 나온 것을 알고 있답니다만, 그와 같은 입법방식은 근거의 타당성을 해명하기 어려운 타협의 극치로 보여질 따름입니다.

안기부법의 개정에 관하여 더욱 근본적으로 생각하여야 할 점은 이 부서가 국가안보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기관이며, 안기부직원은 얼마안되는 '선서공무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 복종하고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염숙히 선서한 후 근무를 시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기부'라는 기관은 애국애족의 진정한 사명감없이 운용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야당에서는 정권안보기관화한 안기부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입법권을 행사하고, 여당에서는 정권의 연장에 안기부를 활용하기 위하여 권한의 강화를 꾀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진한 의견같지만 안기부가 여야 모두에 의하여 왜곡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은 안기부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광범위하게 유린, 억압, 위축되는 부작용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기본적인 권에 관하여 우리는 헌법규범을 상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들이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국가 보안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 사상, 양심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살피면 과연 안기부가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국민전체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가의 절대적인 위기를 당하여서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거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유보하고서라도 국가안보를 위하여 투신할 터이나,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의 상태를 위기관리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규정하느냐하는 것도 각계의 관점과 정보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부당하고 과다하게 억압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는 전혀 무고한 자도 억울한 처벌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였고, 안기부의 실제활동이 오로지 국가안보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정권안보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어떠한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는지 안기부 등 정보기관으로부터 적확한 계도를 받고 있지 못하며, 안기부 등의 위기론에 대하여 순순히 받아 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근본적으로 국민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결과적으로도 국민자신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 안기부의 역할은 뭘까 아니나

그런데 최근 망명의사를 밝힌 북한의 국제담당비서 황장엽의 남한내 고정간첩에 대한 발언이 보도되자 나라안이 몹시 술렁였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현재 개회된 임시국회에서 안기부법이 냉철하게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제가 발표하였던 두편의 논고의 대강을 정리하여 거의 그대로 발표하기로 합니다.

## 2. 안기부의 위상과 활동에 대한 개관

### (1) 안기부권력의 비대화

안기부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인식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안기부의 활동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막강하므로 그 표현이 결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제3공화국을 창출하는데 기여하였으며, 박정희정권의 유지를 위하여 선봉적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초기의 중앙정보부법에는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안기부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부장, 차장, 기획조정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었을 뿐이고, 나머지 예산회계법상의 산출내역불제출권한, 국회에서의 중언, 답변거부권, 다른 국가기관에의 협조요청권등 규정은 모두 안기부의 특권적 지위를 인정하여 주는 특례조항들이었습니다.

간부직원의 정치활동금지조항도 사문화된 장식적 조항이었습니다. 안기부야말로 야당 탄압, 선거관여, 삼선개헌등 정권유지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니 위 조항의 허구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은 군사정권시대의 기만적인 법률용어상의 실례로 봅니다. 군사정권에서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속셈을 가지고 중앙정보부를 설치하면서 위 기관이 정치와는 무관한 기관인 것처럼 버젓이 명문화하여 놓았던 것입니다.

### (2) 안기부의 정보보안업무 조정감독권한

가) 실효성있는 국외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는 매우 어렵고, 전문성을 요구하며, 위험을 동반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국외정보수집업무는 안기부가 주축이 되어 수행할 수 밖에 없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도 주어져 있습니다. 국내정보의 수집은 국외정보의 수집업무보다는 용이한데다가 여러 가지 법령의 규제를 초월하는 예외적인 권한이 부여되고, 시설과 장비의 자유자재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개개인 및 공사(公私)기관, 단체를 통제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량이 정치행정을 왜곡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억압력으로 발휘되었던 것입니다.

나) 그리고, 그와 같은 억압력이 정부기관의 활동을 지배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까닭은 안기부에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권을 부여하고, 각급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안기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 및 보안업무조정감독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1981.3.2. 대통령령 제 10239호), 조정,감독의 대상기관과 범위를 열거하였는데, 대상기관은 통일원,외무부,내무부,법무부,국방부, 체신부(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과학기술처, 공보부 등을 주요대상으로 명시하고, 그 이외 명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하였으므로, 조정,감독대상이 되는 기관은 제한이 없는 셈입니다.

다) 안기부에서 조정감독하는 업무는

- 1) 통일원의 소관사항으로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정세의 조사,분석 및 평가, 남북대화,이북 5도의 실정에 관한 조사,분석,평가, 통일교육
- 2) 외무부의 소관사항중 국제정세의 조사,연구, 국외정보의 수집과 외전(外電) 및 해외방송의 청취, 재외국민의 실태조사 및 연구, 출입국자의 보안, 통신보안
- 3) 내무부의 소관사항으로는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 의사경찰정보의 수집,작성, 정보사범등의 내사 및 수사정보와 시찰업무, 신원조사업무,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
- 4) 법무부의 소관사항으로는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및 작성, 정보사범등에 대한 검찰정보의 처리, 공소보류된 자의 신병처리, 적성압수금품의 처리, 정보사범의 보장 및 교도, 출입국자의 보안,통신보안
- 5) 국방부의 소관사항으로는, 국외정보업무,국내보안정보업무 및 통신보안업무, 정보사범에 대한 국방부,군정보의 처리, 공소보류된자의 신병처리, 적성압수금품의 처리, 정보사범의 보도 및 교도, 군인 및 군무원의 신원조사업무, 정보사범의 내사와 수사정보와 시찰업무.
- 6) 정보통신부의 소관사항으로는 우편검열 및 정보자료의 수집, 전파감시, 기타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업무
- 7) 해양수산부의 소관사항으로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정보사범 등의 내사,수사 및 시찰, 통신정보, 통신보안업무
- 8) 과학기술처의 소관사항으로는 북한 및 공산국가의 과학기술관계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활용

9) 공보부의 소관사항으로는 신문, 잡지 기타 정기간행물과 방송등 대중전달매체의 활동동향의 조사·분석·평가, 대공심리전, 대공민간활동 등에 관한 사항

라) 안기부장은 안기부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기부법 제 15조) 종전의 정보 및 보안업무조정감독규정 제 3조 제 3항에는 안기부장은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언제든지 국외과학기술정보, 국제정세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 국세사법, 무역 및 외국의 상업, 이민사무, 사회단체등록등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협력할 의무가 지워져 있습니다. 위와 같은 명문규정이 절제되었다 할지라도 같은 수준의 협조요구권은 행사되고 있으리라 추측합니다.

(2) 안기부의 국내정치관여

현재의 안기부법에는 부장, 차장 이하 안기부직원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일정한 정치관여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기부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이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에 대하여 찬양 또는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유포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되며,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관련대책회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소속정당 또는 다른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위 행위와 관련하여 보상 또는 보복으로써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은 과거에 안기부가 실제 행하여 오던 일을 실정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위 규정은 안기부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994. 1. 5. 개정안에 삽입된 것입

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도 안기부의 정치관여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지난 1995년도에 안기부에서 지방자치제연기의 필요성, 방법, 선거연기를 여론화하는 방법을 획책하다가 노출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문제를 안기부에서 관하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조직적 업무기획은 안기부에서 국내정치의 근간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안기부의 국내정치관여는 정보정치, 공작정치의 폐단을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번에 안기부법이 개정되어 찬양, 고무 등의 범죄를 안기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은 안기부의 대국민 접촉범위를 넓히고, 국민의 정치활동을 일선에서 억압하는 기구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개정입니다. 특히 지난번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서 선거에 관여한 인물이 안기부의 국내담당차장으로 임명된데 대하여 양식있는 국민들은 하나같이 안기부에서 다음 대선에 노골적으로 관여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인사라고 비판을 하고 있으며, 현정부에 대하여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안기부가 국내정치에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정보수집업무를 소홀하게 행하기 쉽고, 국내정치에 월권적으로 관여하여 정치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 (3) 안기부의 수사권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안기부는 몇가지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수사도 포함됩니다. 국가보안법의 남용에 의하여 인권이 어떻게 유린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곧 안기부에서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남용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살피는 것과 동일합니다. 안기부에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예가 많았고 국가보안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무고한 국민의 회생을 초래하였습니다. 안기부의 수사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 제가 판단할 때에 지나친 부분이 매우 많았으며, 자유민주주의 이념 그 자체와 배치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인권문제에 관하여서라면 안기부에서도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는 듯한 언급을 하기도 하고, 현재는 그와 같은 무지막지한 인권침해는 없다고 해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겪는 바로는 안기부는 여전히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빈번히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례는 박충열, 김태년 사건에서의 가혹행위와 최근 김형

찬군에 대한 가혹행위 등을 들 수 있고, 변호인접견권 및 수진권에 대하여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할 뿐 아니라, 변호인의 접견권 행사에 대하여는 수사방해로 비난하기 조차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기부법이 개정된 시기적 배경으로는 간첩 정수일 사건, 북한 잠수함의 강릉침투사건 그리고 한총련사건등이 논하여 집니다.

안기부의 논거를 정확히 전하여 듣지는 못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건들이 발생한 이유는 간첩 정수일의 경우 국가보안법 제 7조의 찬양고무등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로 부터 박탈하였기 때문에 일찍 적발할 수 없었으며,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한 이후 국민들로부터 대공범죄의 의심이 나는 경우에 대한 신고수가 격감하였고, 한총련사태가 막심한 피해를 야기한 것은 경찰의 대공수사력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거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첩 정수일을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찬양, 고무 등의 언동을 하여서가 아니라 그의 통신문이 감지되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기부에서 수사권을 행사하는 회합, 통신죄에 저촉되었기 때문에 그의 간첩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릉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하여 안기부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한총련의 배후에 북한공산정권의 사주가 있다고 한다면, 안기부에서는 위와 같은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여 경찰의 수사활동을 조력하여 주어야지 안기부에서 추적하고 보유한 정보가 경찰에 없다고 하여 경찰의 대공수사력에 의문을 표시하는 것은 부당한 주장입니다.

최근 이한영씨 피살사건에 관하여 안기부와 경찰에서 수사의 혼선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저희가 느끼는 소감은 안기부에서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수사의 중복과 혼란을 초래하고 경찰을 무능한 기관인 것처럼 폄하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안기부가 정보수집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과연 수사권까지 가질 필요가 있는가를 심각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CIA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을 다 알려진 바이고, 이번 국제심포지움에서 새롭게 알려진 사실은 서독시절과 통독시대에서는 첩보기능과 경찰기능을 조직적이고 기능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표자 룰프 피스너의 논고중에서, "IM Westdeutschland und nun im vereinten Deutschland gilt das Gebot der(organistorischen und funktionellen) Trennung von Gehimdienten und Polizei") 혹자는 불란서의 해회안전총국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예로 들기도 하나,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안기부처럼 내국인의 국내활동에 대한 수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안기부가 굳이 수사권을 보유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기부의 수사권행사는 정보수집기관과 수사기관을 겸하게 되어 그 권한을 남용할 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속성상 비밀수사를 선호하게 되어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데 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방도가 막연하고, 안기부의 수사권행사는 인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정보수집기관으로서의 사명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 3.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

#### (1) 안기부법 자체상의 통제규정

##### 가) 국회에 의한 통제

###### 1) 예산결산상의 통제

안기부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총액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과 첨부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기부는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관위와 같은 독립 기관의 대우를 받을 뿐 아니라, 예산사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다른 독립기관보다 더 자유롭습니다.

종전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거의 아무런 통제가 없었으나, 1994. 1. 5. 개정에 의하여 국회정보위에 안기부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안기부의 예산심의는 비공개로 하며, 정보위소속 국회의원은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회계검사는 부장의 책임하에 소관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행하고, 부장은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정보위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안기부의 예산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기부의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의하면 수천억원에 이르고 이 금액은 사법부나 국회의 예산보다 더 많을는지 모릅니다.

#### 나) 국회출석, 증언에 의한 업무파악

종전에 안기부장은 국회의 예산심사 및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거부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국회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안기부장의 국회출석증언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부장의 출석, 답변거부권을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부장이 분명한 이유없이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출석,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한'하고,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기밀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 하되, 그 사유를 소명하게 하였습니다. 국회에 출석, 답변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비밀로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안기부는 대통령에 대하여서만 보고의무를 졌으나, 법개정이후에는 국회정보위에도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것이 국회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 이상에서 살펴보면 안기부의 활동은 대통령 또는 국회에 의하여서만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는 안기부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안기부가 국내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불필요한 경비를 감소시키고 해외정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집중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안기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안기부의 성향은 좌우됩니다. 대통령이 안기부를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기부의 정치화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서 안기부의 업무내용을 정밀히 파악하여 정치관여행위가 발견되면 이를 위법행위로서 고발하여야 할 것이며, 그 지시감독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지도 검토하여 발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 형사처벌에 의한 통제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기부법에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를 신설하여 이에 위반하는 안기부직원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정보정치와 공작정치의 폐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받는데 매우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안기부의 부장, 차장 및 기타직원의 정치활동관여를 금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에 위반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벌조항에 관하여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특별히 노출된 이외의 경우에는 위 조항에 위반된다 하여 처벌된 예가 없었으며 전술한 지방자치제선거관여행위가 분명한 정치관여행위인데도 이를 처벌하지 않고 책임자가 퇴직 하는 선에서 끝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안기부의 부장 차장 및 기타 직원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안기부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 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수진) 및 제209조에 의하여 수사에 준용되는 구속의 통지, 구속된 피고인과의 접견, 수진, 제90조(변호인의 의뢰)와 군사법원법의 관계규정(제63조, 제127조, 제129조 및 제130조)등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7년이하의 징역과 7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인신구속에 관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안기부의 직원이 업무수행상 고충을 느끼고 있다 하나 위 조항은 일반형법조항에 비하여 그 형이 가중된 것은 아닙니다.

안기부 직원은 수사관의 안내에 순종 .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금한다든지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안기부법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더라도 일반형법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기부법에 안기부의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규정을 신설한 것은 이점에 관한 안기부의 폐해가 크고 원성이 드높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직권남용의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된 바 없으나, (얼마전 민노총위원장 권영길씨에 대하여 보석취소문제를 전화문의한 자가 스스로 밝힌대로 안기부수사관라고 한다면 그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임), 적법절차의 준수에 관하여는 대법원 및 변호인의 노력에 의하여 상당히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결정례를 내놓았으며, 변호인중 접견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준항고를 하는 한편 개인적인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여 인용된 바 있습니다. 또한 안기부에 구금시설이 없어 인근경찰서를 유치장소로 특정한 채 안기부에 계속 구금한 상태로 수사를 하는 관행에 대하여도 법원에서 위법결정을 내렸습니다. 안기부에서도 이와 같은 저희들의 주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 업무를 수행하면 좋을 터인데 저희 변호사들을 매우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통제

### 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원용문제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1994. 1. 7. 제정되어 있으나, 안기부가 위 법상의 공공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기부에 대하여도 위 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나)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제한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제한은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절차를 거치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기부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수사를 위하여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취지상 통신비밀을 보호하는 것이나 안기부의 수사영역과 관련하여서는 광범위한 허용규정처럼 운용될 수 있습니다.

#### 4. 결론

우리 국민에게 안기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나 강합니다.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태생 자체가 정치적이었습니다. 정보수집권을 집중하고, 정보수집의 관점에서 국가기관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며, 정보기관에 의하여 정권을 창출하고 유지할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설치목적이 그러할진대 안기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가기를 바라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기부는 제 2의 정부, 그림자정부로서 잘못 운영될 소지가 놓후합니다.

솔직한 생각으로는 안기부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하지만, 국가안전보장보다 정권안보를 위하여 봉사하였다고 볼이 더 타당합니다. 즉 안기부가 순수하게 운용되지를 않고 국내정치에 깊이 관여하는 가운데 매우 왜곡된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안기부는 어떠합니까. 안기부는 대통령소속하에 설치되어 있고, 대통령의 지시 감독을 받으므로, 대통령이 안기부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안기부의 위상과 역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정부 초기에 안기부는 과거의 비위와 의혹을 털고 새롭게 태어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안기부법의 개정에 의하여 수사권이 제한되고 인권관련조항이 삽입됨에 이르러서는 안기부는 적어도 상징적으로 격하된 것과 마찬가지였으며, 안기부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기부에서는 국외정보수집에 주력하며, 과학, 무역 정보의 수집에도 일익하겠다는 의도를 표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치있는 국외정보를 수집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는데에는 미치지 못한 듯하고, 국내정보수집에 관하여 관여를 하지 못하게 된데 대한 불만이 점증되었던 것으로

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정부의 집권이 해를 거듭하면서 차츰 안기부의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탓인지 중요한 공적으로 삼았던 안기부의 수사권제한규정을 철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실증적 근거없이 단지 여론에 따라 입법을 시도한 것은 후일 반드시 그 허구성을 노정하기 마련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안기부 국내담당 차장에 지난 대통령선거시에 경찰청장으로서 선거에 관여하였던 자를 임명함으로써 국민들은 다음 대통령선거는 안기부를 중심으로 하는 관권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안기부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상당히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그와 같은 개선에 대하여 안기부직원은 수사방해행위로 보려는 경향이 있고, 최근에도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안기부의 업무수행자세에 대하여는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밀실수사의 위험성이 큰 수사상의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기부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유력합니다. 안기부는 범죄정보수집에 전념하고, 일선 검경과 협력하여 수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신분이 분명한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기부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고발이 있어야 할터인데 그 경우 후속적인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어려움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기부직원의 직무상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가 아닌 타부서에서 담당하여야 엄격한 적용이 가능하여 질 것입니다.

〈안기부가 지금까지의 운용방식을 탈피할 수 없다고 하면 장차 현재의 안기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새로운 목표와 역량을 지닌 정보수집부서를 창설하는 것도 생각하여 볼 만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국가기관이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용기가 다 발휘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안기부 대공수사권 회복에 관한 견해

양 동 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안기부 대공수사권 회복에 관한 견해

양 동 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0 현재 논란중인 안기부법 개정문제는 '북한의 대남공작 및 남한 사회주의 혁명세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비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우리 사회에 침투 암약증인 북한 간첩들을 효과적으로 색출할 것이냐, 비효과적으로 색출할 것이냐?' '특정 정권의 기관이 아닌 국가의 기관으로서의 안기부의 반국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억제활동을 효율화할 것이냐, 비효율화 할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얻으려면 이런 3가지 질문에 대한 각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북한의 대남공작과 사회주의 혁명세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로 한다면, 북한의 간첩들을 효과적으로 색출하기로 한다면, 안기부의 반국가범죄에 대한 수사 억제활동을 효율화하기로 한다면 찬양 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금지는 철폐되어야 한다.

이 두 범죄에 대한 수사는 현재도 검·경에서 수사하고 있다. 따라서 그 두 행위를 범죄로 다를 것인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더 늘인다 해서 인권이나 민주원리 침해와 관련하여 추가로 크게 문제가 될 사항은 없다.

문제는 안기부라는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안기부가 옛날과 성격이 많이 달라지고 안기부의 수사행동이 옛날과 판이하게 민주원칙과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달라진 상황에서 간첩과 반국가사범에 대한 수사를 효율화하기 위해 두가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자기들도 하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국가안전을 무시하는 사람이나 안기부의 간첩색출작업의 효율화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라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반대 이유로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미 그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다른 국가기관에서 수사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안기부가 그런 행위를 수사하는 것이 인권침해나 민주원칙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안기부가 곧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이라면 그런 주장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다면 그런 주장은 맞지 않다.

0 국가안전을 빙자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본질적으로 해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일은 막아야 하며, 동시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빙자하여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일도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 과거에는 국가안전을 빙자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본질적으로 해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질식시키려는

기독들이 많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인권과 민주를 빙자하여 국가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려는 기도들이 많다.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주의를 안정되게 정착 실현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를 안정되게 정착시키는 일은 그렇게 하자고 외친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과 세련된 테크닉이 필요하다. 국가기관으로서의 안기부의 활동을 어떻게 효율화하고 통제할 것이냐도 그러한 테크닉중의 하나에 속하는 문제다. 우리 사회에서는 안기부의 통제에만 관심이 있고 안기부의 효율적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는 사람이 드물다.

자유민주주의를 안정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적성국들의 간첩이나 반국가·반체제적 범죄자들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침투하여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여론과 정책을 오도하는 일을 저지하는 것이 필수적인 조건의 하나이다. 많은 간첩과 반국가분자들이 온갖 분야에 침투해서 국가의 기밀을 적성국가들과 반국가 세력들에게 폭로하고, 각분야의 여론과 정책을 오도하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안정된 실천은 불가능하다. 그런 나라에서는 간첩과 반국가분자들의 암약으로 인해 혼란과 비효율과 불안이 계속될 뿐이다.

## 0 간첩수사와 성역

과거 베트남 전쟁때 남베트남군과 미군은 베트남과 접경해 있는 인접국가의 영토에 있는 북베트남군과 베트콩군을 공격할 수 없었다. 북베트남군과 베트콩군이 베트남에 인접해 있는 캄보디아 영토에서 남베트남군과 미군을 공격할 준비를 해도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그들을 선제공격할 수 없었고, 또 공산군이 남베트남 영토에서 싸우다가 국경밖으로 도주하면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그들을 추격하지 못했다. 이러한 '성역' 때문에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공산군을 효과적으로 공격하지 못했고 결국 공산군에 패배했다.

니카라과의 혁명전쟁에서도 이러한 '성역'이 있었다. 사회주의 혁명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은 산디니스타 무장 게릴라 및 그에 동조하는 민간투쟁 세력은 카톨릭 성당과 그 신도조직을 '성역'으로 이용했다. 그들은 농촌에서는 카톨릭 농민운동조직을 그들의 은신조직으로 이용했고 도시빈민지역에서는 카톨릭신도 기초공동체를 은신조직으로 이용했다. 또 도시 대중투쟁을 하는 파트는 카톨릭 성당에서 데모파업 폭동을 준비하기도 하고 가두투쟁을 하다가 경비대에 쫓기면 카톨릭성당으로 숨어들었다. 소모사 독재정권의 경비대는 카톨릭교계의 반발이 두려워서 성당구내에 있는 사회주의 혁명분자들을 체포하지 못했고 카톨릭 신도조직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러한 성역 때문에 니카라과에서는 사회주의화를 궁극목적으로 하는 민중혁명이 성공했다.

안기부가 북한간첩과 반국가범죄자들을 색출하는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사해야 할 범죄를 '성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기부는 북한간첩과 반국가범죄자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북한정권에 대한 찬양 고무행위에 대한 수사는 간첩색출의 기본적 출발점의 하나이다. 모든 간첩들이 다 드러내놓고 북한정권을 찬양 고무하는 것은 아니며, 북한정권을 찬양 고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북한간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을 찬양고무하는 사람들의 배후나 주변에는 반드시 북한 간첩이나 그에 포섭된 자가 있기 마련이다.

반국가 범죄행위에 대한 불고지 행위에 대한 수사는 간첩이나 기타 반국가 활동분자들의 포섭네트워크 내지 은신네트워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 필수행위이다. 그러한 불고지행위를 한 사람들이 모두 간첩이나 반국가 범죄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들의 주변에는 분명히 간첩이나 반국가범죄자가 있기 마련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안기부로 하여금 찬양고무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치 전장에서 인접한 캄보디아 영토내에서 공격